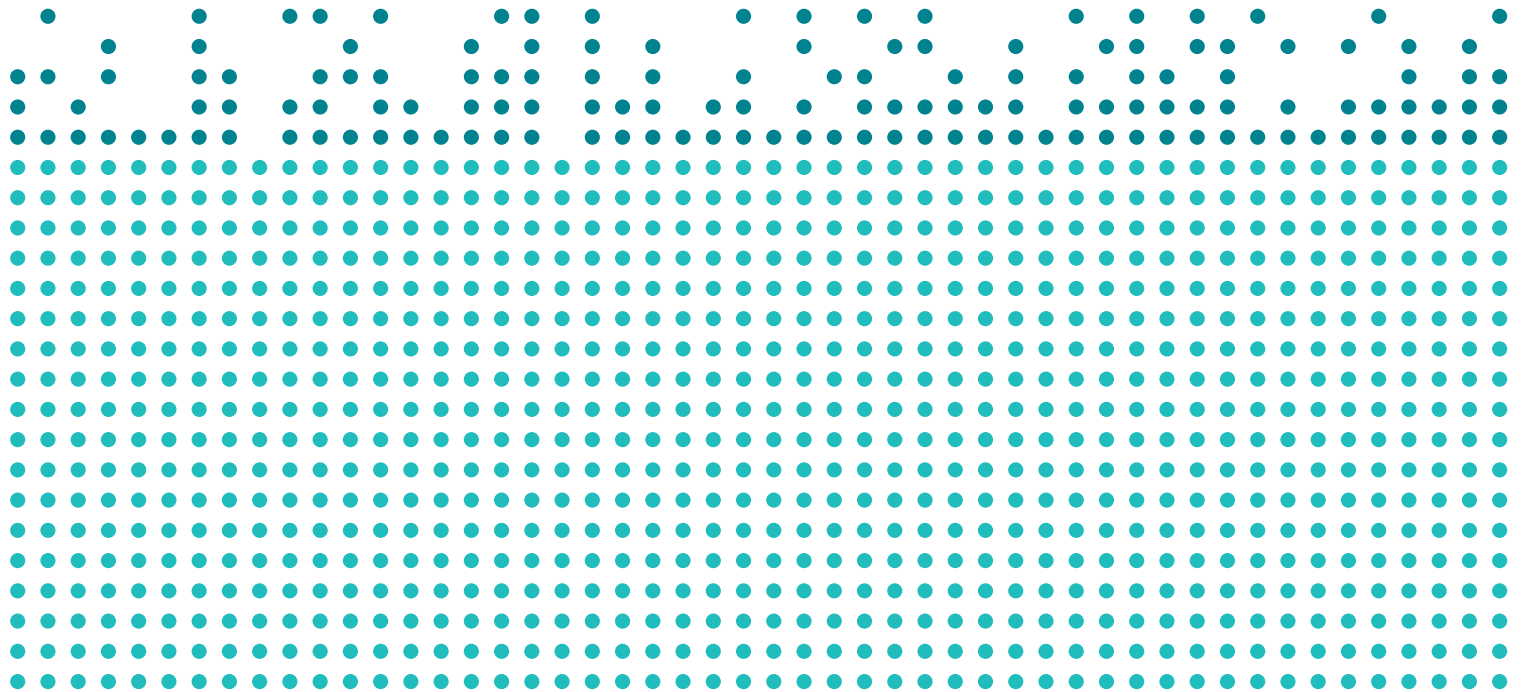




KOCHI자료 11-010

외국인의 중국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우리기업의 영향과 대책



외국인의 중국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우리기업의 영향과 대책

작성

칭다오KBC 이평복 상임고문

베이징KBC 허성무 차장

상하이KBC 김명신 차장

다롄KBC 김우정 과장

광저우KBC 오영주 과장

편집 및 감수

중국사업단 정다은 대리

중국통상전략연구센터 곽복선 수석연구위원

외국인의 중국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책

[요 약]	1
1. 추진배경	5
2. 주요 내용과 쟁점	5
3. 주요 지역별 사회보험 납부율	10
4. 중국진출 외국기업 및 정부기관·협회 반응	12
5. 대응 방안	14
〈부록〉 관련법령(번역문, 원문)	16

[요약]

1. 추진배경

□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개요

-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칙을 확정, 공포함('11.9.6)
 - 법령 : 在中國境內就業的外國人參加社會保險暫行辦法
(중국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잠정규칙)
 - 시행일 : '11.10.15

□ 정책 추진배경

- 중국은 급격한 인구고령화, 출산률 저하에 따라 보험대상자는 급증하는 반면, 적립된 사회보험적립금은 부족
- 사회보험 가입자 수 확대를 통한 사회보험금 확충의 일환

2. 주요 내용과 쟁점

□ 주요 내용

- 양로, 실업, 생육, 의료, 공상의 5대 보험을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이 의무가입토록 규정
- 대상 : ‘외국인취업증’, ‘외국전문가증’, ‘외국상주기자증’ 등의 취업증서 및 ‘외국인거류증’을 취득한 외국인이 대상이며, 이는 사실상 중국 내에서 취업한 모든 외국인에게 해당

□ 주요 쟁점

- (외국인의 보험혜택 여부) 공상보험을 제외하면, 외국인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보험 혜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외국인은 양로보험(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 수급조건인 중국 내 15년 이상 취업의 요건을 달성하기 어려움. 또한 실업보험의 경우 외국인은 해고를 당하면 귀국해야 하며, 의료보험도 외국인은 자국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보험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비용부담 증가) 중국 내 한국인 근로자 및 한국기업의 부담이 많게는 연간 수천억 원까지 증가할 전망
 - 지속적 임금인상 추세에 따라 사회보험 기수 상한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사회보험 미납시 강력한 불이익이 부과되어 인건비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양로보험 면제혜택) 한국은 2003년 중국과 사회보험 상호면제협정을 체결, 양로보험은 가입 면제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

3. 주요 지역별 사회보험 납부율

□ 지역별 사회보험 납부율(예상)

- 칭다오, 베이징, 상하이 등 3개 주요 도시의 사회보험 납부율 및 납부액* (2011년 납부기수 상한액 기준)

구 분	납부기수 상한액 (위안)	양로보험 포함시		양로보험 면제시	
		납부율** (%)	납부액 (위안)	납부율** (%)	납부액 (위안)
칭다오	7,137	43.5	3,105	15.5	1,106
베이징	12,603	43.5	5,485	15.5	1,956
상하이	11,688	48.0	5,610	18.0	2,104

* 현재 외국인에게 적용될 보험납부율 미발표, 중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납부율을 기준으로 작성

** 기업+개인 부담 최대납부율

○다렌의 경우, 납부기수 상한을 폐지하는 쌍기수(雙基數) 정책이 '11년 9월부터 시행되어 기업부담 급증이 우려됨

* 쌍기수 정책 : 기업과 개인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납부기수를 분리, 기업의 납부기수 상한선을 폐지(납부기수 상한선은 사회월평균임금의 3배)

4. 중국진출 외국기업 및 정부기관·협회 반응

□ 중국진출 한국기업 반응

○인건비 상승에 대해 높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외자기업의 중국 내 경영환경 악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

□ 중국진출 외국기업 반응

○(일본 기업) 진출기업 및 주재원수가 많고, 양로보험 면제협정도 체결되어 있지 않아 부담이 큰 상황. 대부분 본사 차원에서 보험료 납부를 위한 추가경비를 준비 중임

○(싱가포르 기업) 비용상승에 대한 부담 우려 및 대책 마련 고심

□ 중국 주재 외국 정부기관, 기업협회 반응

○(일본)

- JETRO : 일본 기업들의 관심이 많아 각 지역에서 관련 세미나 개최 중이며, 정부 차원에서 중국과의 보험관련 협상으로 일부 면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 지켜보고 있음.

- 일본상회 : JETRO와 함께 민관합동 공동대응 예정

○(싱가포르) 싱가포르상회: 중국 상무부 등 관련부처와의 면담 계획

○(미국) 미상공회의소: 회원사 대상 설명회 개최 및 관련정보 제공

5. 대응 방안

□ 우리 기업 대책

- (신속한 정보 파악) 조만간 발표될 실시세칙 및 지방정부 실시방안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장기적 대책 마련) 현지 인력 채용비중을 높이는 등 회사 인력운영의 전반적 재검토와 대책마련

□ 정부 차원 대책

- (양로보험 상호면제 확인) 국민연금 상호면제협정을 통한 양로보험의 면제 혜택 범위 및 행정문제에 대해 정부간 확인 필요
- (추가 면제협상 진행) 양로보험 외에도 추가 면제협상 가능여부 검토 및 협의 추진

1. 추진배경

□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배경

○ 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중국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칙을 확정, 공포함(부록 참조)

○ 중국 노인인구의 폭발적 증가가 배경

- 60세 이상 중국인 고령자수는 2010년 1억 7,765만명(13.3%)을 기록하였음
- 2020년에는 2억 4,800만 명, 2050년에는 4억 명(총인구의 1/3)으로 폭발적 증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이렇게 보험대상자는 급증하고 있는 것에 반해 적립된 사회보험금은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정부로서는 사회보험 가입자 수 확대를 통한 사회보험금 확충이 필요한 상황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무가입 실시는 이러한 배경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장기적으로 외국인의 현지법인 취업 감소를 통한 중국 현지인의 취업 증대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주요 내용과 쟁점

가.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내용

○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은 양로, 실업, 생육, 의료, 공상의 5대 보험을 의무가입토록 규정

○보험가입대상 ‘외국인’의 범주는 취업증 혹은 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이거나 중국 국내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기업 및 사회단체에 취업한 외국인으로, 사실상 중국내에서 취업한 모든 외국인이 사회보험 의무가입자 대상으로 분류됨

1) 양로보험

○외국인은 중국 양로보험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움

- 양로보험 수급조건은 중국에서 15년 이상 취업하여 납부한 경우여야 하나, 대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러한 수급자격에 도달하기 전에 귀국하는 것이 일반적
- 설령 상기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하여도 매년 생존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또한,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양로보험 개인구좌 예치액으로 일괄 지불받고자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수속과정이 관례적으로 보면 간단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

○한국은 상호면제협정 체결로 인한 면제혜택 가능

- 중국의 양로보험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며 5대 사회보험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
- 한국은 2003년 중국과 사회보험 상호면제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중국 내 취업한 한국인의 경우 양로보험은 가입 면제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됨

*국민연금공단 사회보험 협정상대국 보험료 면제방법

- 협정대상국에 파견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국제협력센터 또는 지사에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신청서를 제출
 - 인사발령서 및 파견명령서 등 각종 관련서류 첨부

- 그러나 중국 정부의 실제적용이 어느 수위까지 이루어질지는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음

*각종 취업 케이스별 양로보험 면제적용 논란

- ① 본사 사직 처리 후 중국 법인으로 부임한 직원의 경우, ② 중국내 자체법인 운영자, ③ 중국 현지채용 한국인 등의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양로보험을 신청해야하는지 확실치 않은 상태임
- 한국의 지역보험에 가입한 후 이 보험료 납입증명을 제출하는 방법도 제기되고 있으나 실효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

2) 실업보험

○해고시 보험처리 문제 발생

- 실업보험의 경우, 중국에서 해고를 당하면 외국인취업증과 거류증을 회사가 회수하고 귀국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실업보험의 혜택을 일체 받을 수 없음

3) 생육보험

○‘1가구 1자녀 정책’의 외국인 적용여부 불분명

- 생육(출산)보험의 경우, 중국의 1자녀 출산정책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첫 자녀에 게만 혜택을 줄 것인지, 예외 적용을 해 줄 것인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

4) 의료보험

○외국인이 얻을 수 있는 실익 논란

- 중국 의료보험은 입원을 할 정도의 중대한 수준의 질병에만 혜택이 집중되어 있으며 사소한 질병은 혜택이 거의 없음
- 또한 대체로 많은 외국인들이 중대한 질병이 생겼을 경우 귀국하여 자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보험 가입을 통해 외국인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적다는 분석이 지배적

5) 공상보험(산재보험)

○가장 실용성 있는 보험 항목

- 산업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

나. 주요 쟁점

□ 비용부담 증가

○중국 내 한국인 근로자 및 한국기업의 부담이 많게는 연간 수천억 원까지 증가할 전망

- 약 10만 명의 중국 장기근무 한국인 중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호면제협정에 의거하여 양로보험을 면제받아 사회보험 납부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됨
- 그러나 중국에 장기근무중인 한국인 중 한국 내 국민연금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중국에서 실업, 의료 등의 보험과 함께 양로보험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
- 만일 한국 내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많을 경우 중국주재 한국인들의 보험료 납부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

○한편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대체로 중국내 고액연봉자에 해당되어 사회보험 납부기수(基數)* 상한액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음

*보험료 납부기수(繳納基數)란?

- 근로자 본인의 전년도(前年度) 월평균임금이며, 기업은 연간 1회(매년 3월 경) 근로자 본인의 전년도 월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보험료납부 임금기수(繳納基數)”로 사회보험기구에 신고
 - 월평균임금 산정시에는 기본임금 및 상여금, 잔업비, 수당, 보조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
- 납부기수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 도시별 전년도 사회평균 월임금을 기준으로 각각 300%, 60%

○지속적 임금인상에 따라 사회보험기수 상한액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

- 베이징 시는 임금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에 매년 5~15%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도 2010년 이래 2년 연속 20%이상 인상하였음

○다렌시와 같이 쌍기수(雙基數) 정책을 실시할 경우 기업부담 급증

- 다렌시는 사회보험 납부기준과 관련 2011년 78호 문건 (‘大連市人民政府貫徹落實省政府關於實行城鎮企業職工基本養老保險省級統籌制度的實施意見’, 이하 ‘의견’)을 발표하고 2011년 10월 1일부터 양로보험의 기업과 개인기수 분리운영을 시행함(쌍기수 정책)
- ‘의견’에 따르면 기업의 양로보험 납부기수는 전월 급여총액이며, 기존의 전년도 평균임금의 3배로 규정됐던 상한선이 철폐됨. 개인의 납부기수는 종전과 같이 전년도 월평균임금(상한선 적용)
- 이 기준이 외국인 사회보험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상한선 철폐에 따라 기업부담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사회보험 미납시 강력한 불이익 부과,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할 듯

- 사회보험 미납 기업에 대해 취업증 미발급 및 벌금 부과
- 현실적으로 회피 수단이 없어 기업별 인건비 재원확보 필요

□ 양로보험 면제혜택 관련

○(사례)중국에 진출한 S사는 한국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인민폐로 환산, 중국 내에서 지급되는 급여와 합산한 전체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중국 정부에 납부

- 한국 내 국민연금도 별도로 가입 후 연금액을 납부하고 있어, S사의 경우 중국 사회보험료 납입 부담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한국 납부소득세 중 해외 납부부분은 제외 후 부과)

○그러나 S사와 같이 관리를 하지 않았던 기업의 경우, 사회보험료 중 양로보험 면세를 위한 국민연금 증명서 발급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음.

3. 주요 지역별 사회보험 납부율

*현재 외국인에게 적용될 보험납부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아래는 중국인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납부율 기준임

가. 칭다오

○(납부기수 상한액 기준) 사회보험 납부율 및 금액

사회보험 종류	칭다오			
	기업부담		개인부담	
	납부율	금액(元)	납부율	금액(元)
양로보험	20%	1,427.4	8%	570.96
의료보험	9%	642.33	2%	142.74
실업보험	2%	142.74	1%	71.37
공상보험	0.5%	35.69	없음	—
생육보험	1%	71.37	없음	—
합계	2,319.53위안		785.07위안	
	(1) 기업+개인 양로보험 포함 납부: 3,104.6위안			
	(2) 기업+개인 양로보험 제외 납부: 1,106.2위안			

10

○사회보험 납부율

- ① 양로보험 포함시 43.5%(기업 32.5%, 개인 11%)
- ② 양로보험 면제시 15.5%(기업 12.5%, 개인 3%)

○2011년 납부기수(基數) 상한액

: 7,137위안(2010년 칭다오시 사회평균 월임금의 3배)

- 만일 칭다오시 거주·취업 한국인이 월소득을 (납부기수 상한액을 초과하여) 8,000 위안으로 신고할 경우, 사회보험 납부부담은 기업+개인 합하여 총 3,104.6위안임.
- 양로보험 면제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1,106.2위안

나. 베이징

○(납부기수 상한액 기준) 사회보험 납부율 및 금액

사회보험 종류	베이징			
	기업부담		개인부담	
	납부율	금액(元)	납부율	금액(元)
양로보험	20%	2,520.60	8%	1008.24
의료보험	10%	1,260.30	2%+3元	255.06
실업보험	1%	126.03	0.2%	25.21
공상보험	0.2–1.5%	25.21(0.2%)	없음	—
생육보험	0.8%	100.82	없음	—
합계	4,032.96위안		1288.51위안	
	(1) 양로보험 포함납부: 5,321.5위안			
	(2) 양로보험 제외납부: 1,792.6위안			

○사회보험 납부율

- ① 양로보험 포함시 42.2~43.5%(기업 32~33.3%, 개인 10.2%)
- ② 양로보험 면제시 14.2~15.5%(기업 12~13.3%, 개인 2.2%)

○2011년 납부기수(基數) 상한액

: 12,603위안(2010년 베이징시 사회평균 월임금(4,201위안)의 3배)

다. 상하이

○(납부기수 상한액 기준) 사회보험 납부율 및 금액

사회보험 종류	상하이			
	기업부담		개인부담	
	납부율	금액(元)	납부율	금액(元)
양로보험	22%	2,571	8%	935
의료보험	12%	1,403	2%	234
실업보험	2%	234	1%	117
공상보험	0.5%	58	없음	—
생육보험	0.5%	58	없음	—
합계	4,324원		1,286원	
	(1) 기업+개인 양로보험 포함 납부: 5,610위안			
	(2) 기업+개인 양로보험 면제 납부: 2,104위안			

○사회보험 납부율

- ① 양로보험 포함시 48%(기업 37%, 개인 11%)
- ② 양로보험 면제시 18%(기업 15%, 개인 3%)

○2011년 납부기수(基數) 상한액

: 11,688위안(2010년 상하이시 사회평균 월임금(3,896위안)의 3배)

4. 중국진출 외국기업 및 정부기관·협회 반응

□ 중국진출 한국기업 반응

○(현재상황) 대다수의 한국기업들이 사회보험 의무가입 규정 공포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세척 발표를 기다리고 있음

- 현지기업들은 세척 발표 후 공동대응을 통한 대책마련을 고민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수용해야만 할 것으로 판단
- 아직 직접적인 납부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기업들도 일부 있으며,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처리지침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일단 시행되기 전까지 정책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임

○(우려 및 향후 예상) 많은 기업들은 사회보험 의무가입으로 인한 비용상승에 대해 우려를 표시함.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외자기업의 비용 상승을 유발하는 정책으로 중국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

- 유예 또는 시범기간 없이 갑자기 발표된 사안이라 현지진출 법인은 한국 본사와 협의 중이며, 가능하다면 시행시기를 연기하거나 납부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중국의 산업구조조정 정책과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일련의 현상으로 해석되며, 이 외에 앞으로 또 다른 제재규정이 발표될 것으로 우려
- 특히 다렌의 경우, 기업과 개인 부담을 별도로 관리하는 쌍기수제도를 시행하여

외국인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할 경우 기업의 사회보험금 부담이 너무 높아져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 납입과 관련된 납입기준액 상한제가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중국진출 외국기업 반응

○한국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대략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에 대해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

○(일본) 투자기업 및 주재원 수가 비교적 많고, 한국과 달리 양로보험에 대해서 중국과 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부담이 큰 상황임

- 베이징 진출 일본기업들은 대부분 본사 차원에서 보험료 납부를 위한 추가경비를 준비 중이며, 일본 정부 및 상회를 통해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
- 특히 다렌 진출 일본기업들은 다렌시 정부에 일본기업협의회를 통해 쌍기수 및 외국인 사회보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상태임

○(싱가포르)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고심 중인 기업이 많음. 기업이 주도적으로 먼저 보험료를 납부하려는 사례는 적을 것으로 보임

□ 중국 주재 외국 정부기관, 기업협회 반응

○외국 정부기관(일본 JETRO)

- 외국인 중국 사회보험 가입의무화 규정의 방향은 타당하나, 실행 및 발표과정에서는 외국정부 및 기업들과의 사전협의를 선행되었어야 한다는 입장임
- 아직 뚜렷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세칙 미확정 상태라 좀 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계획
- 일본과 중국 양국 간에 보험 관련 협정을 체결해 보험료 일부 징수가 면제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정부간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함

- 각 주요도시에서 사회보험 의무가입 관련된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으며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한 일본 투자기업들의 관심 고조

○외국 기업 협회

- (EU, 미국 상공회의소) 중국 사회보험법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중국 사회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정보를 파악해 회원사에게 제공하고 있음. 또한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대응방안 모색 중
- (일본상회) JETRO와 함께 민관합동으로 공동대응할 계획
- (싱가포르상회) 중국 상무부 등 관련부처와의 면담을 계획 중

5. 대응 방안

□ 우리 기업 대책

○(신속한 정보 파악) 실시세척 및 각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실시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책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한 사전 대비

- KOTRA, 현지 공관, 한국상회 등이 제공하는 관련 정보를 숙지해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체계적인 대비책 마련
- 관련기관과의 접촉을 통해 지역별 사회보험 납부절차 및 규정 등 행정절차를 정확히 인지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함

○(장기적 대책 마련) 기업의 인력 및 직무조정, 임금복리 재설계, 관리효율 향상 등 중국정부의 세무, 노무정책의 중장기적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 현지경영에 반영

- 장기적으로 인력의 현지화를 통해 1) 한국직원을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2) 가능한 부분은 현지 인력으로 대체하는 등 회사 인력 운영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대책 마련 필요

□ 정부 차원 대책

- (양로보험 상호면제 확인) 우선적으로 국민연금 상호면제협정을 통한 양로보험 면제 혜택에 대한 적용 범위와 가능여부를 중국정부와 재차 확인해야함
- (추가 면제협상 진행) 양로보험 외 사회보험 전반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와 추가 면제협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협의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정책이 한국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차별정책이 아닌 이상 현지 규정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우선시됨. 그러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외국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관련 상세자료는 블로그 “KOTRA 중국 비즈니스 포럼” 참조

- 운영자 : 코트라 칭다오 한국투자기업진출지원센터 이평복 고문
- 주소 : <http://cafe.naver.com/kotradalian>

〈부록〉

(번역문)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국 내 취업하는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잠정규칙
중화인민공화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령 제16호

2011년 9월 6일 발표

제1조[목적 및 근거] 중국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의 법적 사회보험 가입과 사회보험 대우를 향수하는 합법 권익을 지키고, 사회보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이하 「사회보험법」 으로 약칭) 에 근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외국인 입국취업] 중국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은 법에 의거<외국인취업증> <외국전문가증> <외국상주기자증> 등의 취업증서 및 <외국인거류증>을 취득하거나 <외국인 영주거류증>을 가진, 중국 국내에 합법적으로 취업하는 非중국국적 인원을 지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중국 국내에서 법에 의거하여 등록 또는 등기된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非기업단위, 기금조직(펀드),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등 조직 (이하 “고용단위” 로 약칭)이 법에 의거 채용하는 외국인은 법에 따라 직공기본 양로보험, 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 및 생육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단위와 본인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제4조[보험가입등기] 고용단위가 외국인을 모집하는 경우, 취업증수속일부터 30일 내에 사회보험등기 수속을 행해야 하다.

국의 고용주에 의해 중국국내 취업단위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인은 전항 규정에 따라 중국국내 취업단위가 해당 직원의 사회보험 등기 수속을 행해야 한다. 법에 의거 외국인취업증 수속을 행하는 기구는 외국인의 중국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적시에 당지 사회보험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사회보험관리기구는 관련기구에 대해 외국인취업증수속 상황을 정기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제5조[사회보험대우]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외국인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규정에 의거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다.

규정된 양로연금의 수취연령 도달 전에 출국하는 경우, 해당 개인의 개인구좌는 보류되며, 재차 중국에 와서 취업하는 경우, 납부연한은 누적 계산된다. 본인이 사회보험관계의 종료를 서면 신청할 경우, 사회보험기구는 해당 개인의 개인구좌 예치잔고를 일회성으로 본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승계] 외국인이 사망하는 경우, 해당 개인의 사회보험 개인구좌 잔고는 법에 의거 승계될 수 있다.

제7조[국외 생존인증] 중국 국외에서 매월마다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은 매년 해당대우의 지불을 책임지는 사회보험취급기구에 재외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이 발행하는 생존증명 또는 거주국 관련기구의 공증, 인증을 거치고 재외 중국 대사관, 영사관이 인증한 생존증명을 매년 1회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중국에 입국하고, 사회보험기구에 직접 자신의 생존상황을 증명하는 경우, 전항에 규정된 생존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제8조[쟁의 처리] 법에 의거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외국인과 고용단위 및 국내 취업단위에 사회보험으로 인한 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법에 의거 조정,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용단위 혹은 중국내 취업단위가 그의 사회보험 권익을 침해한 경우, 외국인은 사회보험행정부문 또는 사회보험비용 징수기구에 법적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상호 면제협정] 중국과 사회보험 관련 양자 혹은 다자간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적인원이 중국 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 그의 사회보험 가입하는 방법은 협정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외국인사회보장번호] 사회보험관리기구는 <외국인 사회보장번호편제규칙>에 근거하여, 외국인을 위한 사회보장번호를 만들고,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카드를 발행한다.

제11조[감독검사] 사회보험행정부문은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상황에 관해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고용단위 혹은 중국국내 취업단위가 고용된 외국인을 위해 사회보험 등기수속을 행하지 않거나 또는 법에 의거 사회보험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법 및 「노동보장감찰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행정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고용단위가 법에 의거 취업증 수속을 행하지 않거나 혹은 <외국인영주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외국인의 중국내 취업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시행일시] 본 규칙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원문-중국어)

中華人民共和國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令

第16号

《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参加社会保险暂行办法》已经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第67次部务会审议通过，并经国务院同意，现予公布，自2011年10月15日起施行。

部 长 尹蔚民

二〇一一年九月六日

在中國境內就業的外國人參加社會保險暫行辦法

第一条 为了维护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依法参加社会保险和享受社会保险待遇的合法权益，加强社会保险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以下简称社会保险法），制定本办法。

第二条 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是指依法获得《外国人就业证》、《外国专家证》、《外国常驻记者证》等就业证件和外国人居留证件，以及持有《外国人永久居留证》，在中国境内合法就业的非中国国籍的人员。

第三条 在中国境内依法注册或者登记的企业、事业单位、社会团体、民办非企业单位、基金会、律师事务所、会计师事务所等组织（以下称用人单位）依法招用的外国人，应当依法参加职工基本养老保险、职工基本医疗保险、工伤保险、失业保险和生育保险，由用人单位和本人按照规定缴纳社会保险费。

与境外雇主订立雇用合同后，被派遣到在中国境内注册或者登记的分支机

构、代表机构（以下称境内工作单位）工作的外国人，应当依法参加职工基本养老保险、职工基本医疗保险、工伤保险、失业保险和生育保险，由境内工作单位和本人按照规定缴纳社会保险费。

第四条 用人单位招用外国人的，应当自办理就业证件之日起30日内为其办理社会保险登记。

受境外雇主派遣到境内工作单位工作的外国人，应当由境内工作单位按照前款规定为其办理社会保险登记。

依法办理外国人就业证件的机构，应当及时将外国人来华就业的相关信息通报当地社会保险经办机构。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定期向相关机构查询外国人办理就业证件的情况。

第五条 参加社会保险的外国人，符合条件的，依法享受社会保险待遇。

在达到规定的领取养老金年龄前离境的，其社会保险个人账户予以保留，再次来中国就业的，缴费年限累计计算；经本人书面申请终止社会保险关系的，也可以将其社会保险个人账户储存额一次性支付给本人。

第六条 外国人死亡的，其社会保险个人账户余额可以依法继承。

第七条 在中国境外享受按月领取社会保险待遇的外国人，应当至少每年向负责支付其待遇的社会保险经办机构提供一次由中国驻外使、领馆出具的生存证明，或者由居住国有关机构公证、认证并经中国驻外使、领馆认证的生存证明。

外国人合法入境的，可以到社会保险经办机构自行证明其生存状况，不再提供前款规定的生存证明。

第八条 依法参加社会保险的外国人与用人单位或者境内工作单位因社会保险发生争议的，可以依法申请调解、仲裁、提起诉讼。用人单位或者境内工作单位侵害其社会保险权益的，外国人也可以要求社会保险行政部门或者社会保险费征收机构依法处理。

第九条 具有与中国签订社会保险双边或者多边协议国家国籍的人员在中国境内就业的，其参加社会保险的办法按照协议规定办理。

第十条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根据《外国人社会保障号码编制规则》，为外国人建立社会保障号码，并发放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障卡。

第十一条 社会保险行政部门应当按照社会保险法的规定，对外国人参加社会保险的情况进行监督检查。用人单位或者境内工作单位未依法为招用的外国人办理社会保险登记或者未依法为其缴纳社会保险费的，按照社会保险法、《劳动保障监察条例》等法律、行政法规和有关规定处理。

用人单位招用未依法办理就业证件或者持有《外国人永久居留证》的外国人的，按照《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处理。

第十二条 本办法自2011年10月15日起施行。

附件： 外国人社会保障号码编制规则

(끝)

2011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BR (Global Business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Check it~! 2011년 해외시장 이렇게 달라진다	2011.1
11-002	한-미 FTA 발효에 대한 美 바이어, 현지 진출 한국기업 및 투자가 반응 조사	2011.1
11-003	남부 수단 독립 진전 현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2011.2
11-004	美 바이어가 뽑은 한-미 FTA 10대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2011.2
11-005	월드컵 특수, 카타르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동향	2011.3
11-006	위기의 리비아, 대체시장을 잡아라	2011.3
11-007	일본 · 인도 CEPA체결의 파급효과와 현지반응	2011.3
11-008	금융위기 이후 중남미 시장 트렌드 1편(멕시코, 브라질편)	2011.3
11-009	금융위기 이후 중남미 시장 트렌드 2편(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편)	2011.3
11-010	동 · 서남아 주요국의 노무여건 변화와 진출기업의 대응 방향	2011.4
11-011	한-페루 FTA 수출유망상품 및 진출방안	2011.3
11-012	일본 대지진 발생 한달 -일본 산업계 복구현황과 대일 수출입 영향-	2011.4
11-013	우리기업의 對인도 투자 트렌드 변화	2011.4
11-014	요르단 물 부족 실태, 정부대책 및 우리 기업 참여 방안	2011.4
11-015	히트상품을 통해 본 일본 소비시장 동향	2011.4
11-016	베트남 유통시장 현황과 진출전략	2011.4
11-017	한-EU FTA 중소기업 수출유망상품	2011.5
11-018	미국 가상상품 시장, 이제 시작이다	2011.5
11-019	키워드로 본 2011년 글로벌 소비트렌드	2011.5
11-020	민중화 사태 이후, 중동 바이어가 전망하는 新 중동 시장	2011.5
11-021	아프리카 표준인증제도 현황 및 의미	2011.5
11-022	일본 지진 이후 식품시장 현황	2011.5
11-023	MENA 사태 이후 150일, 시장 변화와 전망	2011.6
11-024	요르단 전력산업 현황 및 우리 기업(정부) 진출 전략	2011.6
11-025	인도 인플레이션에 따른 투자진출비용변화	2011.6
11-026	한-EU FTA 최대 수혜주, 자동차부품시장을 잡아라!	2011.6
11-027	아프리카 지역내 창업여건 및 유망분야	2011.6
11-028	한-아세안 FTA 체결이후 수출유망품목의 수출동향	2011.6
11-029	美 기업 클라우드소싱 확산과 국내업체 시사점	2011.7
11-030	남수단 독립에 따른 비즈니스 환경변화 및 진출방안	2011.7
11-031	요르단 재생에너지 개발 현황 및 우리 기업 참여 방안	2011.7
11-032	한미 FTA로 날개 달 중소기업 35대 수출유망상품	2011.8
11-033	태국 정부조달시장 분야별 진출방안	2011.9
11-034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 주요 자동차부품 바이어 대한수입 확대 계획	2011.10

□ GIR (Global Issue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최근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1 전망	2011.1
11-002	Post 무바라크 이집트 경제동향 및 전망	2011.2
11-003	한미 FTA에 따른 美 정부조달시장 진출 기대효과 전망	2011.2
11-004	선진국의 환경규제와 기업의 대응사례	2011.4
11-005	2011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 주요내용과 시사점	2011.4
11-006	남유럽 재정위기 1년, 현재 유럽은?	2011.5
11-007	팩스 시니카, 한국의 기회와 위협	2011.5
11-008	소버린쇼크 이후 세계시장 동향 및 수출여건 분석	2011.9

□ KEB (KOTRA Executive Brief)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2011년 1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1.1
11-002	이집트 反정부 시위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11.1
11-003	해외바이어들이 전망하는 최근 이집트사태가 각국 경제 및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11.2
11-004	이집트사태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내역	2011.2
11-005	이집트 사태가 중동과 우리기업에게 미친 영향	2011.2
11-006	중동 북아 사태에 따른 세계경제영향과 향후전망	2011.3
11-007	일본 지진사태가 주요국의 산업에 미친 영향	2011.3
11-008	2011년 2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1.3
11-009	Post 중동민주화, 중동진출 새 활로 된다	2011.4
11-010	시리아 민주화 사태에 따른 우리기업의 유의사항	2011.4
11-011	일본기업의 생산거점 이전 현황조사	2011.6
11-012	해외시장에서 바라본 2011 하반기 수출 전망	2011.6
11-013	2011년 3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1.6
11-014	한-EU FTA 발효 한 달, 현장에서 본 수출확대 효과	2011.7
11-015	최근 인도 투자진출기업의 조세리스크 증가와 대응	2011.8
11-016	재정위기 여파 속, 미국 경제현황 점검	2011.8
11-017	미얀마 현지화 강세가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2011.8
11-018	포스트 카다피, 리비아 시장 전망	2011.9
11-019	2011년 4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1.9
11-020	2011년 4/4분기 수출시장동향 점검	2011.9
11-021	일본 엔고와 대일 교역환경 변화	2011.9

□ KOCHI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에 따른 우리기업의 동향 및 전망	2011.3
11-002	세수(稅收)로 보는 2011 중국경제	2011.3
11-003	중국 고속철도 시대와 新소비지도	2011.3
11-004	中國 소비, Code로 잡는다	2011.5
11-005	中, 위안화 대폭 평가절상 가능성은?	2011.5
11-006	ECFA 체결 1주년 점검, 중-대만기업 설문조사	2011.6
11-007	中 숨겨진 마켓, 신흥 거점도시가 뜬다	2011.7
11-008	ECFA, 우리기업에게 득인가, 실인가?(ECFA 체결 1주년 점검)	2011.7
11-009	中 노무관리 비상! 이것이 해법이다!!	2011.8
11-010	외국인의 중국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책	2011.10

□ 외국인투자정책센터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한-EU FTA 발효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	2011.1
11-002	일본『아시아 거점화 추진전략』조사 및 시사점 분석	2011.5
11-003	러시아의 해외투자 동향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2011.6

□ FDI 현안리포트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World Investment Report 2011 번역 요약본	2011.7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2011 지역별 진출전략	2011.1
11-002	MDB를 통한 해외 정보통신시장 진출전략	2011.1
11-003	스마트 TV 플랫폼 및 콘텐츠의 해외진출 방안	2011.1
11-004	SW 글로벌 마켓 클릭	2011.1
11-005	외국인투자기업, 한국과 通하다- 대표 외국인투자 성공사례	2011.2
11-006	중국의 성시별 해외투자정책 연구	2011.3
11-007	중국의 금융지도	2011.3
11-008	주력품목별 수출시장 전망 및 확대 방안	2011.2
11-009	2010년 해외 고급인력 수요조사 결과보고서	2011.3
11-010	필리핀 노동법 핵심번역본	2011.3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11	GUIDE TO BUSINESS ESTABLISHMENT IN KOREA	2011.3
11-012	GUIDE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2011.3
11-013	Partnering for the Better Future – 30 Success Storie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2011.3
11-014	KOTRA 공동물류센터의 중장기 발전 방안	2011.3
11-015	세계 이러닝 전략지도	2011.4
11-016	그린리포트(Vol 11. 2011 Spring)	2011.4
11-017	주요 7개국 M&A 동향 조사	2011.4
11-018	韓國投資指南与企業經營信息 (한국 투자가이드 및 기업경영정보)	2011.5
11-019	300개 외투기업 주요경영지표 분석	2011.5
11-020	국내주요기관의 해외네트워크 2011	2011.5
11-022	韓國投資ガイドおよび企業經營情報 (한국투자가이드 및 기업경영정보)	2011.5
11-023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의 연계성과 국제투자정책	2011.5
11-024	브라질 투자실무가이드	2011.6
11-025	SEOUL FOOD 2011 결과보고서	2011.6
11-026	EU 조달시장 진출가이드	2011.6
11-027	자동차분야 투자유치 위한 주요경쟁국 투자환경조사	2011.7
11-028	글로벌 ODA, 성공 DNA를 찾아라	2011.7
11-029	2011년 1분기 해외 FDI 동향	2011.7
11-030	2011년 하반기 외국인직접투자전망	2011.7
11-031	외투기업 CEO, 관리자를 위한 노무관리 가이드	2011.7
11-032	Labor Management Guide for CEOs and HR manager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2011.7
11-033	2010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11.7
11-034	2010 외국인투자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1.7
11-035	Foreing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10	2011.7
11-036	그린리포트(Vol 12. 2011 Summer)	2011.8
11-037	인도네시아 투자실무가이드 (개정판)	2011.8
11-038	일본 자동차 부품 MAP	2011.8
11-039	2010년도 Invest KOREA 연차보고서	2011.9
11-040	Green Hub Korea 2011 결과보고서	2011.9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2011 KOTRA 글로벌마켓 포럼	2011.1
11-002	2011 친디아 포럼	2011.1
11-003	글로벌 SW진출전략 워크샵	2011.1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4	2011 KOTRA 해외 공공조달 포럼	2011.1
11-005	2011 아프리카 포럼	2011.1
11-006	한-EU/한-미 FTA 기회와 도전 설명회	2011.1
11-007	2011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포럼	2011.1
11-008	Dow Chemical Global Alliance Project Series	2011.1
11-009	Global IT Channel Vision 2011 (대형 IT유통사 초청 구매전략 설명회)	2011.2
11-010	글로벌 인재유치 및 활용전략 세미나	2011.2
11-011	중동 · 북아프리카 시장 긴급점검 설명회	2011.3
11-012	2011 글로벌 공공병원 기자재 조달플라자	2011.4
11-013	브라질 월드컵 프로젝트 설명회	2011.4
11-014	러시아 사하공화국 대통령 경제사절단 설명회	2011.4
11-015	2011 춘계 글로벌 파워텍 연계 세미나	2011.5
11-016	해외투자전략심포지움	2011.5
11-017	중국 신흥 유통기업 초청 구매전략 설명회	2011.5
11-018	제 1회 아프리카 비즈니스 트렌드 포럼	2011.6
11-019	한-대만 산업자원 협력 포럼	2011.6
11-020	Alstom Grid사 초청 구매정책 설명회	2011.7
11-021	주요 신흥시장 기술협력 유망산업 설명회	2011.6
11-022	중국 미개척시장(우루무치, 난닝) 진출전략 설명회	2011.7
11-023	중남미 의약품 진출전략 설명회	2011.7
11-024	2011 인도 권역별 진출전략 설명회	2011.8
11-025	Technology Cooperation with Korea – German Delegation – (한독기술협력사절단 설명회)	2011.8
11-026	FTA Business Week 2011 시장진출 설명회	2011.9
11-027	FTA Business Week 2011 유통망/자동차 부품 설명회	2011.9
11-028	UN조달 종합 설명회	2011.9

– 외국인의 중국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책 –
– KOCHI자료 11-010 –

발행인 : 홍 석 우
발행처 : KOTRA
편집인 : 박 진 형
발행일 : 2011년 10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2011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외국인의 중국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우리기업의 영향과 대책

K O T R A - C h i n a I n s t i t u t e

